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24. 11. 7.>

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: 7일

장비 명칭	장비고유번호

의료 기관	명칭	종류
	주소	전화번호
	개설자 성명	개설자 생년월일
	개설자 전자우편	

변경 전 인력등록사항

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	성명	면허(자격)종류	면허(자격)번호		근무 종료일
영상의학과 전문의	성명	자격번호	전속	비전속	근무 종료일
방사선사	성명	면허번호	전속	비전속	근무 종료일

변경 후 인력등록사항

특수의료장비의 관리자	성명	면허(자격)종류	면허(자격)번호		근무 시작일
영상의학과 전문의	성명	자격번호	전속	비전속	근무 시작일
방사선사	성명	면허번호	전속	비전속	근무 시작일

「의료법」 제38조제1항 및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통보인: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) 2.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)	수수료 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